

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5. 11. 06.
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교통시설(변경)

(1)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	8,585.3	감) 3,361.7	5,223.6	-	
기정	1	자동차 정류장	차고지	수택동 884 일원	3,861.1	-	3,861.1	경고02-5066호 (02.07.02.)	
변경	2	자동차 정류장	차고지	수택동 883-1 일원	4,724.2	감) 3,361.7	1,362.5	경고02-5066호 (02.07.02.)	

(2)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자동차 정류장	• 위치 변경 - 기정 : 수택동 883일원 - 변경 : 수택동 883-1일원 • 자동차 정류장 면적 변경(감소) - 기정 : 4,724.2㎡ - 변경 : 1,362.5㎡ (감:3,361.7㎡)	•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따른 자동차 정류장 위치 및 면적 변경

-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)
- (1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		3,850.3	증)3,361.7	7,212.0	-	
기정	3	사회복지시설	토평동 984 일원	3,850.3	-	3,850.3	경고96-386호 (96.12.31.)	
신설	5	사회복지시설	수택동 883 일원	-	증)3,361.7	3,361.7	-	

(2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사회복지 시설	· 사회복지시설 신설 - 면적 : 3,361.7㎡	· 장애인들의 편의증진, 자립, 자활지원 등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(장애인복지시설)신설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용지명	도면번호		면적(㎡)	비고
공공시설 용지	기정	D1, E1, E3, E5~E8, F1~F6, G1~G7, H, I, J, M, P	121,945.1	·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합병 허용(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획지경계 로 분할)
	변경	D1, E1, E3, E5~E8, F1~F6, G1~G7, H1~H2, I, J, M, P	121,945.1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○ 공공시설 용지(변경)

도면번호	위치	구 분			계 획 내 용
<기정> D1, E1, E3, E5~E8, F1~F6, G1~G7, H, I, J, M, P	-	용도	허용용도	H	사회복지시설
			불허용도		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
		건폐율	D1, G1~G7, H, I, J, M, P		60% 이하
		용적률	G1~G7, H, I, J, M		300% 이하
		높이	D1, E1, E3, E5~E8, F1~F6, G1, G2, G4~G7, H, I		5층 이하
<변경> D1, E1, E3, E5~E8, F1~F6, G1~G7, H1~H2, I, J, M, P	-	용도	허용용도	H1~H2	사회복지시설
			불허용도		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
		건폐율	D1, G1~G7, H1~H2, I, J, M, P		60% 이하
		용적률	G1~G7, H1~H2, I, J, M		300% 이하
		높이	D1, E1, E3, E5~E8, F1~F6, G1, G2, G4~G7, H1~H2, I		5층 이하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고시 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
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